(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I. ³ A01K 89/00	(11) 공개번호 특1983-0004772 (43) 공개일자 1983년07월20일
(21) 출원번호 (22) 출원일자	특 1981-0000039 1981년01월08일
(30) 우선권주장 (71) 출원인	112917 1980년01월17일 미국(US) 브런즈윅 코오포레이숀 더블류우. 비이. 브레머
(72) 발명자	미합중국 60077 일리노이즈주 스코키 원 브런즈윅 플라자 죤 더블류우. 퍼어여
	미합중국 74133 오클라호마주 털사 101 스트리이트 사우스 이스트 7272
	아아서 디.캘랜
(74) 대리인	미합중국 74008 오클라호마주 빅스바이 122 스트리이트 사우스 이스트 8509 김서일
심사청구 : 있음	

(54) 낚시줄의 조종장치 및 그 제작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낚시줄의 조종장치 및 그 제작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포함한 스핀투척식 낚시리일의 분해사시도. 제2도는 낚시리일스풀의 일부에 대한 확대부분 횡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을 포함한 낚시리일의 측면의 횡단면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도면에 표시하고 본문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제1 및 제2단면 및 중간부와 이 중간부를 통하며 이와 동축을 이루는 통로와 제1 및 제2면에 있는 통로 개구를 가진 중심부와, 제1면에 위치하며 상기 중간부로부터 방사상으로 외방으로 연장되며 내면과 외면을 가지며 미리 선택된 두께를 지닌 제1원통상 플렌지와, 방사상으로 외방으로 돌출하며 플렌지 보다 엷은 두께의 제1플렌지의 주위에 있는 제1림과, 상기 림을 덮어주는 접착제 피복과 상기 림에서 외방으로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돌출하며 접착제에 의해서 상기림에 고정되는 복수개의 짧은 탄성 섬유와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리일 스풀과 낚시줄의 조정 장치 및 그 제작방법.

청구항 2

중간부에서 방사상으로 외방으로 뻗으며 제2면에 있는 제2플렌지와 내부면과 외부면과 미리 선택된 두께를 가진 플렌지와 방사상으로 외방으로 돌출하며 플렌지보다 엷은 두께의 제2플렌지 주위에 있는 제2림과를 포함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 기재의 낚시리일스풀.

청구항 3

림에서 외방으로 수직으로 돌출하는 복수개의 짧은 탄성섬유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2항 기재의 낚시리일스풀.

청구항 4

전방으로 돌출하는 중심허브와, 상기 중심허브 위에 장치된 스풀보지 낚시줄과, 스풀의 일부를 둘러싸고 있는 내부면을 가지며 후방으로 뻗은 원통상 사이드스커트를 갖추며 상기 허브와 동축으로 장치되어 전위가능하며 회동가능한 스피너헤드와, 스피너헤드를 회전시키며 축방향으로 전위시키는 장치와, 섬유가스피너헤드와 허브위에 장치된 스풀사이에 낚시줄의 물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스피너 헤드의 내부와 림사이에 있는 공간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로스트 페이스(closed face) 스프닝 리일.

- (a) 제1 및 제2단면 및 중간부와 이 중간부를 통과하며 이와 동축으로 이루어지는 통로와 제1 및 제2면에 있는 통로개구와를 갖춘 중심부.
- (b) 중간부에서 방사상으로 외방으로 뻗으며 내부면과 외부면을 가진 플렌지와 미리 선택된 두께를 가지며 제1면에 위치한 전방돌출원통상의 제1플렌지.
- (c) 방사상으로 외방으로 돌출하며 플렌지보다 엷은 두께를 가진 제1플렌지의 주위에 있는 제1팀.
- (d) 상기 림을 덮어주는 접착제 피복.
- (e) 상기 림에서 외방으로 그리고 수직으로 돌출하며 접착제에 의하여 이 림에 고정되는 복수개의 짧은 탄성 섬유.

청구항 5

상기 섬유는 직경 1/2~5밀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3항 기재의 낚시리일스풀.

청구한 6

상기 섬유는 길이 약 30밀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 제3항 또는 제4항 기재의 낚시리 일 스풀.

청구항 7

상기 림에 고정된 최소한 80%의 섬유가 상기 림에서 외방으로 수직으로 돌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 허청구의 범위 제3항 또는 제4항 기재의 낚시리일 스풀.

청구항 8

스풀이 유리충전된 폴리카아보네이트, ABS 및 유리충전된 ABS 구릅의 1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3항 또는 제4항 기재의 낚시리일 스풀.

청구항 9

플렌지의 외부면이 통로와 동심으로 되어 있는 언더커트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3항 또는 4항 기재의 낚시리일 스풀.

청구항 10

림이 반원 횡단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3항 또는 제4항 기재의 낚시리 일 스풀.

청구항 11

림이 반원추곡선회전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8항 기재의 낚시리일 스풀.

청구항 12

플렌지를 가진 낚시리일 스풀에 플렌지보다 엷은 림을 제공하며, 심봉 위에 스풀을 위치시키며, 접착제로 림만을 피복하며, 림위에 섬유를 정전기적으로 축적시키며 접착제에 의하여 림에 부착되지 않은 섬유를 제거하며, 마지막으로 접착제를 경화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낚시리일 스풀의 림을 섬유플럭킹(fiber flocking)하는 방법.

청구항 13

각개의 스풀이 스풀 플렌지의 두께보다 엷은 림을 가지며 심봉위에 장치된 복수개의 스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 기재의 방법.

청구항 14

피복단계가 접착제로 흠뻑 적신 패드위에 스풀 림을 진동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특허 청구의 범위 제12항 또는 제13항 기재의 방법.

청구항 15

제거단계가 심봉을 진동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2항 또는 제13항 기재의 방법.

청구항 16

제거단계가 심봉위에서 스풀을 회전시키며 이들 스풀에 에어블로잉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

의 범위 제12항 또는 제13항 기재의 방법.

청구항 17

접착제가 젖어 있을 때는 약 6밀의 두께로 도포되고 경화되었을 때는 약 3밀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2항 또는 제13항 기재의 방법.

청구항 18

상기 림이 반원횡단부를 이루기 때문에 접착제가 플렌지의 다른 부분에 접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2항 또는 제13항 기재의 방법.

청구항 19

경화단계가 실온에서 공기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2항 또는 제13항 기재의 방법.

청구항 20

경화단계가 스풀을 약 140°F~약 200°F의 온도 범위로 가열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2항 또는 제13항 기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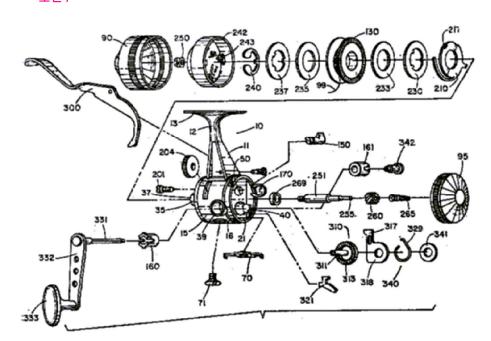
청구항 21

플러그 섬유(flock fibers)는 직경이 약 1/2~5 밀이고 길이가 20~40 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2항 또는 제13항 기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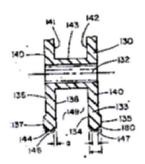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